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33 발의연월일: 2022. 6. 17.

발 의 자:이종성・구자근・김승원

김예지 • 박형수 • 윤상현

이성만 • 이학영 • 정우택

정운천 · 허종식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안마사가 안마사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동 규정으로 인하여 그 사업방법 및 사업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안마사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

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82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 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 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Č	행			개 정 안
제82조(안마사)	1	~	3	(생	제82조(안마사) ① ~ ③ (현행과
략)				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			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
					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
					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
					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
					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
					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
					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.
<u>④</u> (생 략)				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